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049호]

2025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 로고를 부여하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 추진목적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부여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신뢰도 확보
- 지원규모 : 11개사 내외
 - ※ 세부 내용 해당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평택시 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품 및 관내 공장 생산 OEM·ODM 제품
 - ※ 단, OEM·ODM 여부를 명확히 증빙해야 함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까지(약 6개월 내외)
- 주요내용 : 관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여 및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우수제품 인증 : 평택시 우수제품 인증 로고 부착 및 사용 허가
 - 마케팅 지원 : 우수제품의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02 인증로고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 우수제품 선정업체 인센티브

-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일부 사업)
- 인증 로고 2년간 사용
 - 인증로고는 기준규격에 의하여 자체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제작 사용
 - 선정된 제품, 포장, 홍보물 등에 로고 사용
- 평택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내 우수제품 게시

□ 인증 로고 사후관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연장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 1회 연장시 2년, 최대 2회 가능
- 사용기간 연장, 업체명·품목·소재지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우수제품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붙임 3. 참조)
- 사후점검 : 필요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품 품질 및 유통 상태 점검
 - 품질 저하, 소비자 민원 등 부정적 사례 발생 시 인증 취소 가능
 - 인증 취소 시 인증 로고 사용 중단 요청 및 관련 내역 공지

< 사후점검 항목 및 내용(안) >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점검방법	결과
• 제품 생산 여부	인증된 제품이 현재도 생산 판매 중인지 확인	현장 확인 또는 증빙서류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품질 유지 상태	제품 품질이 인증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시료 확인 또는 품질자료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인증 로고 사용 실태	인증 로고가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지정된 규격 사용 여부 등)	실물 확인 또는 마케팅 자료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민원 및 소비자 불만 이력	최근 1년 이내 관련 민원 및 클레임 발생 여부	자체 보고서, 외부기관 자료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기업 기본정보 변경 여부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등 주요 정보 변경 여부	사업자등록증, 변경신청서 등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 기타 특이사항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사항 존재 여부	종합 검토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03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80,000천원 이내 / 총 11개사 내외

※ 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지원내용	기업 수	지원금(천원)
마케팅 지원	대상	1개사	10,000
	최우수상	2개사	7,000
	우수상	3개사	5,000
	장려상	5개사	3,000

○ 지원 대상 금액(소요 비용)의 한도 내 100% 지원(부가세 제외)

○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지원대상 : 우수제품 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등수별 지원금 차등)

□ 지원내용 : 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과 관련된 브랜드 디자인, 패키징, 전시, 입점 등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협약 체결 이후 집행된 2025년 비용 지원

구분	세부 지원내용
브랜드 디자인 및 패키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박스 디자인 및 제작 ○ 포장지 및 포장재 제작 ○ 제품 스티커 디자인 및 제작 ○ 기타 홍보 및 브랜딩 관련 디자인 작업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개선 및 제작 지원 ○ 지역 신문, 잡지,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 전단지, 리플렛, 배너,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옥외 광고(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 비용 지원
전시 및 프로모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제작 지원 ○ 팝업스토어 및 오프라인 행사 개최 지원 ○ 샘플 제작 및 프로모션 비용 지원
디지털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홍보 영상 및 사진 촬영 지원 ○ 제품 리뷰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 지원 ○ 브랜드 스토리 및 콘텐츠 기획 지원
대형 유통망 입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온라인몰(쿠팡, 네이버 등) 입점 지원 ○ 바이어 상담 및 매칭 지원

□ 추진일정



04 신청 및 접수

- 사업공고 : 2025. 6. 17.(화) ~ 7. 17.(목) 15:00까지
 - ※ 제출서류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 서류 누락 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 신청방법 : ‘평택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pipabiz.or.kr/icu)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문의처 : 기업지원팀 박선정 연구원(031-8029-9342, sjpark@pipabiz.or.kr)
- 제출서류 :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파일 번호 매기기)
 - PDF로 변환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넘버링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정리하여 ‘기타서류’에 업로드(신청기업명.zip)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붙임 1.
2	제품 설명서	붙임 2.
3	우수제품 변경(연장) 신청서	붙임 3.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 4.
5	확약서	붙임 5.
6	발표자료	ppt, pdf 제출
7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
8	법인등기부등본	-
9	제품 품질 관리 규정	-
10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대조필 날인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11	2023, 2024 재무제표	2024년 재무제표 발급 전인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12	중소기업 확인서	정부24 발급
13	4대 보험 가입자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14	기타 증빙서류	특허권, 기타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15	제품 카달로그	-

05 평가 방안

□ 서류검토

- 제출 서류 기반 적정성 및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 사업담당자 검토
-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

□ 선정평가

- 3~5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및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
- 과제 총괄책임자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무책임자 발표 가능
-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인 배석 가능
- 발표는 PPT 자료를 활용하여 15분 발표(발표 7분, 질의 8분) 진행 예정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안) >

구분	내용	배점
기업 역량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보유 기술력 및 인증(특허, KC, ISO 등) 	20
제품 우수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혁신성 및 차별성 • 품질 경쟁력 및 성능 우수성, 기존 시장 제품과의 경쟁력 	30
시장성 및 사업성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시장 수요 및 성장 가능성, 생산·공급 안정성 • 목표 시장 및 유통 전략의 적절성, 가격 경쟁력 	25
기대효과 및 파급력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 기여도, 일자리 창출 효과 • 수출·해외 진출 가능성 	25
합계		100

※ 동점일 경우 ‘제품 우수성 → 시장성 및 사업성 → 기업 역량 → 기대효과 및 파급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득한 기업 선정

06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비용은 반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명시된 지원대상·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비용을 반환할 수 있음
- 기업 수요, 운영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사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성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 산정 및 후속조치 가능